

●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-2호

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7)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13일

국립소방연구원장

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7) 일부개정 공고

1.3.1 중 “2022년 12월 1일” 을 “2023년 2월 13일” 로 하고, 1.5.1 중 “「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)」에” 를 “기준에” 로 하며, 1.5.2 중 “제정 기준이” 를 “개정 기준이” 로, 같은 코드 중 “제정 기준에” 를 “개정 기준에” 로 한다.

2.2.1.3 중 “호스릴할론소화설비는” 을 “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는” 으로 하고, 2.7.3 중 “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” 을 “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를” 로 하며, 같은 코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“다만,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.”

2.7.4 중 “호스릴할론소화설비는” 을 “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는” 으로 하고, 2.7.4.4 중 “호스릴할론소화설비의” 를 “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” 로 하며, 2.7.4.5 중 “호스릴할론소화설비가” 를 “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가” 로 한다.